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651
----------	-------

제출연월일 : 2025. 9.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처분 등의 취소·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안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65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2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제21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각각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부일의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2호 중 “이자상당가산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3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을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과세표준을”을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수정하여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세표준신고를 한”을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후단 중 “20일”을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 및 제4항 전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 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생략)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

③ ~ ⑪ (생 략)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10. (생 략)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u>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u> 가.·나. (생 략) <u>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u>	<u>부고지서</u> 4. <u>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u>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u>나목부터 라목까지</u>----- -----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u>
--	---

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신 설>

라.·만. (생 략)

③ (생 략)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 4. (생 략)

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
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
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
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
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제
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
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
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
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
한이 경과하는 때

만.·바. (현행 라목 및 마목
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u>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u>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생략)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일을 말한다. 1. (생략)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 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중 <u>납부고지서에</u> <u>따른 납부기한</u> 후의 납부지연 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u>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u> <u>한</u>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 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 부고지서의 발송일 3. ~ 8. (생략) ③ ~ ⑦ (생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	5. ----- ----- ----- -<u>지정납부기한</u>----- -----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지정납부기한</u> ----- ----- -- <u>지정납부기한</u> ----- ----- -----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

----- 납부고
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
까지의 기간 -----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자율

<신 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
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
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
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
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
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

이자 상당 가산액-----

----- 날
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
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정하는 이자율

<신 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

----- 지정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 100분의 3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
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u>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④ ~ 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u>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u>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u>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가산세</u>----- ----- ----- -----.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지정납부기한</u>----- ----- ----- ----- ----- ----- -----. ⑧ ----- ----- ----- <u>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u>-----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	---

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략)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신 설>

----- 제2호의 -----

1. (현행과 같음)

2. -----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생 략)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
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
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정납부
기한-----

-----.

⑤ -----

----- 제1항제3호 및 제4
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나. (생략)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그 예정신고 및 중
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
조에 따라 -----

----- 수정
하여 신고한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라. -----

---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

----- 기한 후 신고를 한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
----- 심판청구인,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
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
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
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
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
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 6.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소득세
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
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
6제6항-----

2. ~ 6.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
과 통지 등) ① (생략)

<신 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
과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
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
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3)

----- . -----

----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

<신 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3항 및 제4항 전단에 -----

-----.

⑥ 제5항-----

-----.

다.

<신 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

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⑧ -----

----- 제5항 -----

-----.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⑩ ----- 제5항 -----

-----.

⑪ ----- 제10항 -----

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1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해	당	없	음		
지출								
	소 계(A)							
수입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국기법§21, 47의4, 47의5)	1	2	2	2	2	9	1.8
	○ 독촉장 송달비용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21, 47의4, 47의5)	9	18	18	18	18	81	16.2
	소 계(B)	10	20	20	20	20	90	18
	총 비용(A-B)	10	20	20	20	20	90	1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산출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2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하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2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 25.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 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21, 47의4, 47의5)

○ 세수증 : 1.8억원

- 최근 연간 납부지연가산세 총액 1.3조원
- 가산세율 차이 = 30개월 × 0.67 - 913일 × 0.022 = 0.014%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기 이후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하므로 평균 체납기간을 30개월로 가정)
- 연간 세수효과 : 1.3조원 × 0.014% × 4.5/5('26.7.1. 이후 시행) = 1.8억원

※ 다만, 가산세율 차이 외에 산출방법 개편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개별 과세정보가 필요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행동변화도 가정해야하므로 추정 곤란

②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21, 47의4, 47의5)

○ 세수증 : 16.2억원

- 우편발송 비용 : 일반 430원, 등기 2,830원(150만원 이상이므로 모두 등기 송달)
- 150만원 이상 독촉장 발송건수 : 62만건(전체 413.4만건 중 15%)
- 연간 세수효과 : 2,830원 × 62만건 × 4.5/5('26.7.1. 이후 시행) = 16.2억원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팀장	실장·국장
전해일	김태경	김성수	조만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태경	044-215-4151	tkkim21@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	-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팀장	실장·국장
전해일	김태경	김성수	조만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태경	044-215-4151	tkkim21@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